



명쾌한 수다

반품된 식품을 판매업체가 유통기한 표시없이 보관해도 될까요?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의 대상에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포함될까요? 또한 영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식품 들을 일정한 자오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영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설명

수산식품회사의 사내이사인 A와 B는 회사 소유 냉동창고에 반품받은 자숙문어 381.8kg을 유통기한, 제품명, 원료명 등의 표시사항을 생략한 채 진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원재료명, 내용량 등의 표시가 없으면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처벌조항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37조 제3항·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의 쟁점은?

‘영업에 사용’?

반품받은 자숙문어 제품 38.8kg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되어 ‘영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영업이란 무엇일까요?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 다른 법적 의미의 ‘생산’은 위와 같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식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을 위해 단순히 보관하는 등의 영업 준비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반품된 자숙문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것은 단순히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영업’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 생략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영업에 사용’은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위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의 전단계인 식품 보관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활문어를 가공하여 전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도9001 판결).

'영업에 사용'에는 구체적 영업행위의 전단계인 식품보관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반품 받은 자숙문어를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은 다시 판매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 등의 행위를 하는 단계에서는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인 보관단계에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도9001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식품으로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들며 보관단계에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함께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1. 영업의 전단계로서의 식품보관도 영업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
2. 식품위생법 제1종의 입법 목적을 고려한 식품 보관단계의 표시 사항 유지의 중요성

이 두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